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4. 1-----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4. 1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제1차 총무위원회(2002. 4. 4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주5일 근무제」 도입에 따른 토요일 휴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휴직을 했다
가 복직할 경우의 불합리한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
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주5일 근무제」 도입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
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6조의2 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
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 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
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
(아래산출방식)토록 함 (안 제20조제2항)

$$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휴가일수}$$

- 다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
(2001년 6월)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(안 제22조)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가. 지방공무원법제59조(위임규정)

나.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 및 제20조
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, 제22조(공가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
-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제20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음
- 2001. 6월부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